

**금정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018. 02.



농림축산식품부

< 목 차 >

제 1 장 주민의견 수렴	3
1.1 주민의견 수렴개요	3
1.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3
제 2 장 의견수렴 결과	9
2.1 주민의견수렴 결과	9
2.2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9
2.3 의견수렴 관련서류	17

제 1 장 주민의견 수렴

1.1 주민의견 수렴개요

- 본 계획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환경상의 영향에 대해 지역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의거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1.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1.2.1 계획시행권자 및 승인기관

- 계획수립기관 및 승인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1.2.2 협의기관

- 협의기관의 장 : 환경부

1.2.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 중앙일간지 : 한겨레
- 지방일간지 : 충청일보
- 정보통신망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1.2.4 공람공고 내용

- 공람기간 및 장소

구 분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2017. 11. 09 ~ 2017. 12. 02 (21일간, 공휴일 제외)
공람 장소	지자체	음성군 생극면사무소
	정보통신망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2017년 12월 09일까지)
- 의견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1.2.5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 개최

장 소	일 시	대 상 읍·면	참여인원
생극면사무소	2017. 11. 23 (목요일), 10:00	생극면 등	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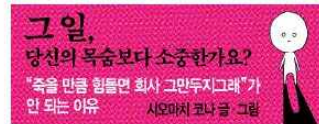
주) 참여인원은 참석자 명부 기준임

1.2.6 일간지 및 정보통신망 공고

한겨레 (2017. 11. 09)

한겨레

hani.co.kr



5판 9224호 2017년 11월9일 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426호

고려·금정·업성·유상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 내지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고려·금정·업성·유상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평가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0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명 : 고려·금정·업성·유상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나. 위치 및 주요계획 내용

지구명	위치 및 주요계획 내용
고 려	인천 강화군 고려지 내 인공습지 2개소, 침강지 1개소 등 설치
금 정	충북 음성군 금정지 내 인공습지 2개소, 식생수로 1식 등 설치
업 성	충남 천안시 업성지 내 침강지 1개소, 식생수로 1식 등 설치
유 상	경북 영천시 유상지 내 인공습지 1개소, 침강지 1개소 등 설치

다. 기본계획 수립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라. 사업시행(예정)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7년 11월09일 ~ 2017년 12월02일(21일간, 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지구명	공 략 장 소
고 려	내가면사무소
금 정	생극면사무소
업 성	부성1동 주민센터, 부성2동 주민센터
유 상	북안면사무소, 남부동 주민센터

3.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지구명	설명회 일시	설명회 장소
고 려	2017. 11. 24. 13 : 00	내가면사무소
금 정	2017. 11. 23. 10 : 00	생극면사무소
업 성	2017. 11. 23. 15 : 00	부성1동 주민센터
유 상	2017. 11. 22. 14 : 00	북안면사무소

4. 주민의견 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람시작일로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2017년 11월 09일 ~ 2017년 12월 09일)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서면제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사업처(☎061-338-5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일보 (2017. 11. 09)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제20858호 忠淸日報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426호

금정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 내지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금정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평가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0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계획의 내용

- 가. 계획명 : 금정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나. 위치 및 주요계획 내용

지구명	위치 및 주요계획 내용
금정	충북 음성군 금정지 내 안공습지 2개소, 식생수로 1식 등 설치

- 다. 기본계획 수립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라. 사업시행(예정)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17년 11월09일~2017년 12월02일(21일간, 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지구명	공람장소
금정	생극면사무소

3.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지구명	설명회 일시	설명회 장소
금정	2017.11.23. 10:00	생극면사무소

4. 주민의견 제출 및 방법

- 가. 제출기간 : 공람시작일로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2017년 11월 09일~2017년 12월 09일)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서면제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사업처(☎061-338-5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웃안내

사이트맵

정보공개

규제개혁

국민소통

알림소식

정책홍보

우리부소개

알림소식

공지 · 공고

보도자료

해명/설명

인사/채용

주요소식

소식지

Home > 알림소식 > 공지 · 공고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계획 공고

이름

장보현

담당부서

농업기반과

등록일

2017-11-09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고려, 금정, 음성, 유성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426(수질개선사업 주민설명회).hwp

수질개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_요약문.zip

OPEN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계획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인쇄

복록

이전글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 시행 알림

2017-11-08

다음글

▼ 2017년 우수공무원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실시

2017-11-09

- 5 -

제1장 주민의견 수렴

정보통신망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등재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환경영향평가소개 사업조치 및 정보입력 협의통계 국민참여 건강영향평가

국민참여
National participation

- 협의전행현황
-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 **평가서 초안 공람**
- 사유자자료
- Q&A
- FAQ
- 평가서참

평가서 초안 공람

사업명	유상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사업위치	현황 소매지 면적		
	경상북도 영천시 복안면 유상리 일원	32,300 m ²	
협의대상 (협의관련법령)	행정계획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법에 사업기본계획		
사업구분	수자원개발 / 농업기반개발사업기본계획		
사업계도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 승인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규모 : 32300 m² · 사업비 : 00 백만원		

초안공람 주민의견수렴

■ 협의업무 담당

협의기관	환경부	담당자	곽영규
담당부서		E-mail	jkkwak@korea.kr
전화번호	044-201-7298	Fax번호	02---

■ 초안공람

초안문서	(초안)0100_오악문(1-17)(완본).pdf (초안)0100_건강영향평가항목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77-82).pdf (초안)0000_개발기본계획의 작성상(83-94).pdf (초안)0011_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95-165).pdf (초안)0012_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지형지물(166-171).pdf (초안)0013_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172-184).pdf (초안)0014_수질영향 분석(수질, 수리수문)(185-253).pdf (초안)0021_기.기상(254-259).pdf (초안)0021_나.대기질(260-278).pdf (초안)0021_다.토양(279-287).pdf (초안)0021_라.소음진동(288-301).pdf (초안)0022_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302-305).pdf (초안)0023_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306-312).pdf (초안)0030_사회경제환경과의조화성(환경친화적토지이용)(312-316).pdf (초안)1000_총합평가 및 결론(317-326).pdf (초안)1100_부록(327-406).pdf (초안)0000_표지, 세내지, 목차.pdf (초안)0100_오악문(1-17).pdf (초안)0000_개발기본계획의 개요(18-25).pdf (초안)0030_개발기본계획의 면적 및 입지 대안(27-31).pdf (초안)0040_건강영향평가항목의 작성(33-37).pdf (초안)0050_지역개발(38-71).pdf (초안)0060_건강영향평가항목의 심의내용(73-76).pdf		
초안 공고일	2017.11.09	초안공람기간	2017.11.09 ~ 2017.12.02
공람장소	영천시 복안면사무소, 남부동주민센터		
설명회장소	영천시 복안면사무소		
설명회일시	2017.11.22	의견제출기간	2017.11.09 ~ 2017.1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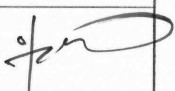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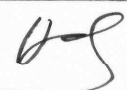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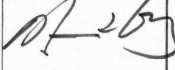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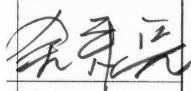
1.2.7 주민설명회 사진



1.2.8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계 획 명	금정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개 최 일 시	2017년 11월 23일(목) 10:00
개 최 장 소	음성군 생극면사무소

연 번	성 명	주 소	서 명
	이		
	이		
	제		
	김		
	강		
	정		
	최		
	김		
	송		
	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계 획 명	금정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개 최 일 시	2017년 11월 23일(목) 10 : 00
개 최 장 소	음성군 생극면사무소

연 번	성 명	주 소	서 명
	강		
	진		

제 2 장 의견수렴 결과

2.1 주민의견수렴 결과

○ 주민 의견 없음.

2.2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건	조 치 계 획	비고
환경부	□ 사업개요 ○ 계획명 : 금정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일원 ○ 면 적 : 40,110㎡(인공습지 2개소, 침강지 1개소, 마름제거 등) ○ 기 간 : 착공 후 3년 이내 ○ 계획수립권자(승인권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협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 계획명 : 금정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일원 ○ 면 적 : 47,582㎡(인공습지 2개소, 침강지 1개소 등) ○ 기 간 : 착공 후 3년 이내 ○ 계획수립권자(승인권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협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
	□ 검토의견 1. 총괄 ○ 본 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일원의 저수지에 대한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으로,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중점 평가하여야 함 ○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생태·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현재까지 시행된 수질개선사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사업별 수질개선효과 분석 및 문제점(또는 우수사례)을 바탕으로 금회사업의 시공방법, 규모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 * '07년부터 호내 수질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16년 까지 22개소 완료)	○ 본 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일원의 저수지에 대한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으로,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중점 평가를 실시함 ○ 계획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생태·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제시함 - 주요 수질개선 완료지구에 대한 수질개선 효율, 운영 미비점 등을 분석하여 금회 사업의 공법, 적용방법, 규모 등을 결정하였음 - 또한, 본 계획에 대한 기술검토 및 보고회 등을 통해 최적의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였음	- -

제2장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건	조 치 계 획	비고
환경부	II. 항목별 검토의견 가. 자연환경의 보전 ○ 호소 가장자리(특히 하천수가 유입되는 지역)의 수생식물군락은 어류의 산란장, 치어 생육장소 등의 역할이 있는 바, 공사시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본 지구에 식재되는 정수식물 선정 시에는 현지에서 서식하는 종으로 선정하여 식재 - 수질개선 대책으로 수생식물 제거 사업이 있는 바, 수생식물(마름 및 자라풀)이 수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국내 추가사례와 문헌을 조사하고, 필요 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제시	○ 주요 오염원이 유입되는 일부 하천 유입부를 제외한 호소 가장자리의 훼손을 최소화 하여 산란장, 치어 생육장소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함 ○ 현지 서식종을 고려하여 식재(정수식물) 계획을 수립함 - 수생식물 제거사업은 사업계획에서 제외하였음	반영 반영 -
	○ 인공구조물(침강지 등)의 설치는 수체 흐름 정체, 수생태계 단절 등 수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인공구조물의 적정한 위치, 규모, 형식 등을 면밀히 검토·제시하여야 함	○ 침강지 설치시(부담 등)의 인공구조물이 설치되나, 수체흐름 정체, 수생태계 단절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만수위 아래로 설치하며, 최저평균 저수율을 고려하여 배수문을 설치·개방하여 수체흐름 정체 및 수생태단절을 최소화 함	반영
	나. 수환경의 보전 ○ 본 사업지구 호소수질 결과, 농업용수 수질기준(IV등급)을 크게 초과하지 않은 바,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환경부 수질측정망 및 농촌용수종합정보 시스템 모니터링 지점을 도면에 표시 - 환경부 수질측정망 조사결과는 측정 연월일을 포함하여 제시	○ 본 사업지구는 중점관리 농업용 호소(농식품부·환경부, 16년 10월)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시설이며, 기존 환경부 대체 자연조성사업 정비를 포함하고 수질개선사업 시행으로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기반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환경부 수질측정망(농촌용수종합정보 시스템) 지점을 도면에 제시함 ○ 환경부 수질측정망의 최근 5년간 자료를 연평균으로 제시함	-
	○ 금회 수질개선 사업으로는 저수지 수질 개선의 한계가 있는 바, 유역내 수질오염 물질(점, 비점) 발생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오염원의 저수지 유입을 차단(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질개선 방안(해당 자치단체 합동)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유역내 오염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지자체(음성군)과 농어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농어촌용수 수질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2016.10)	-

제2장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건	조 치 계 획	비고
환경부	- 저수지 유역내 마을 위치, 가구수, 생활하수 발생 및 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쓰레기 방치(농약, 비료 관련), 축산농가 등 오염원 현황 제시(저수지 500m 이내) 및 저감대책 수립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준하여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조사시 불법 대규모 쓰레기 방치 구간은 발견되지 않았음(유역내 주요 오염원 위치 도면으로 제시)	반영
	○저수지와 농경지를 연결하는 용수로 퇴적토 관리 등 하류부 수질개선 대책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용수로 퇴적물에 대해서는 매년 소정의 예산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관리 중임('17년 7,163백만원, 6,000km 정비)	반영
	○수질개선 시설물(인공 습지, 침강지 등)의 경우 강우시와 비강우시(평상시) 유입수의 유입경로 및 배수체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강우시와 비강우시(풍수년, 갈수년, 평수년 등 고려) 하천수 및 강우유출수의 유입 경로 및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호내수를 상시(강우시, 비강우시) 양수하여 인공습지를 통한 수질개선을 실시하는 계획으로, 인공습지 시설에 대한 배수체계를 제시함	반영
	○사업 시행후 호소의 수질변화가 양수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 호소의 수질개선 방법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계획과 구분화된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목표수질은 농업용수 수질관리기준인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IV등급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수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용가능한 시나리오별 수질개선 분석 및 예측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정함	반영
	- 시나리오별 수질예측에서 2013년도를 기준연도로 채택한 사유 제시	○과거 10년 강수량 등을 검토한 결과, 평년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는 시기인 2013년의 수문조건을 반영함	반영
	- 인공습지 필요면적 산정근거, 제원, 계획 평면도, 수질계통도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획유량과 수리학적 체류시간을 명시 - 양수지점의 수량 및 수질현황, 양수량, 양수방법(지속적 또는 간헐적)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	○인공습지 제원(산정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양수시설 설치계획, 제원, 양수방법 등 구체적으로 제시함	반영

제2장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환경부	- 호소의 수질(TOC)이 최고, 평균, 최저일 경우를 고려하여 양수에 따른 수질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목표수질(TOC)의 최고치와 평균치 설정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장래 오염부하량을 반영한 예측 가능한 최고, 평균, 최저농도를 고려하여 목표 수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용가능한 시나리오별 수질변화 분석을 실시하였음 ○ 본 지구는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라 농업용수 측정망에 속해 있어 연 4회 저수지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준공 후 4년 경과 시점부터는 별도의 사후모니터링(국비)을 실시할 계획임 ○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원인 파악 후 시설보완, 추가설치 등을 실시할 계획임	반영 반영
	-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2007~2016) 등 가용통계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호소수질 모형의 보정 및 검증을 수행, 그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제시	○ 호소 수질모형의 보정 및 검증을 수행한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제시함	반영
	- 장래 부하량 변화에 따른 수질변화 예측 모의 시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각 모의결과는 표와 그래프로 제시하되, 공간적 분포결과를 포함 · 무대책, 식생수로, 식생수로, 준설, 침강지, 식생수로+준설, 식생수로+침강지, 준설+침강지, 식생수로+준설+침강지	○ 수질개선 적용 가능공법에 대한 시나리오별 예측을 실시하여 기준년도 대비 수질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함	반영
	- 모의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 전후의 관개기(4~9월) 수질을 비교하여 기준년 대비 수질개선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	○ 모의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 전후의 관개기 수질을 비교하여 기준년 대비 수질개선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	반영
	- 기존 수질측정망 자료와 연계하여 각 시설별 수질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연도에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수질 관리대책 마련	○ 본 지구는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라 농업용수 측정망에 속해 있어 연 4회 저수지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준공 후 4년 경과 시점부터는 별도의 사후모니터링(국비)을 실시할 계획임 ○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원인 파악 후 시설보완, 추가설치 등을 검토할 계획임	반영

제2장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다. 환경기준 부합성 ○ 침강지 계획지역에서 준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준설토 발생량, 처리·재활용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2차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토 활용(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정체수역 내 퇴적물은 유기물 함량이 높아 장기간 노상에 방치될 경우 부패로 인한 악취와 비점오염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침강지 조성시 발생된 준설토는 2차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에 의거하여 유용·사토 등 적정 처리할 계획이며, 본 계획에 따른 준설량을 제시함	반영
	○ 공사소음으로 인해 정온시설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초과 시에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끝.	○ 공사시 정온시설별 소음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공사시 현장여건(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임	반영

제2장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건	조 치 계 획	비고
충청 북도	□ 사업개요 ○ 계 획 명 : 생극면 금정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 위 치 :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금정저수지) ○ 면 적 : 40,110m² ○ 시행기간 : 2015년 ~ 2018년 (4년간) ○ 계획수립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 협의기관 : 환경부 ○ 주요계획 : 인공습지 및 침강지 설치, 기존습지 정비, 호내식생(마름 및 자라풀)제거 등을 통한 호유입부 및 호내 수질개선 대책 마련	○ 계 획 명 : 금정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 위 치 :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금정저수지) ○ 면 적 : 47,582m² ○ 시행기간 : 2018년 ~ 2020년 (3년간) ○ 계획수립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 협의기관 : 환경부 ○ 주요계획 : 인공습지 및 침강지 설치, 기존습지 정비 등을 통한 호유입부 및 호내 수질개선 대책 마련	-
	□ 검토의견 ○ 본 사업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별표2] 2. 개발기본계획 파. 특정지역의 개발 2)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계획의 확정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별표2] 2. 개발기본계획 파. 특정지역의 개발 2)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계획의 확정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득하겠음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라.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별표4]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거 금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갈음하고자 함	-
	○ 위 협의 후 개발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승인권자는 사업의 승인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생태계훼손면적 등을 산정하여 우리도(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개발사업 면적은 총 47,583m²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승인권자는 사업의 승인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생태계훼손면적 등을 산정하여 충청북도(환경정책과)로 통보하겠음	-

제2장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건	조 치 계 획	비고
충청 북도	○본 계획은 인공습지, 식생수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시 대규모 토사 이동·장비(덤프트럭1대, 굴삭기1대)투입 등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변 지역의 정온시설 등이 다수분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환경 관련 규정에 따른 인·허가 신고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수거·운반·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 사전 신고 등 환경 관련 규정에 따른 인·허가 신고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법에 의거 적정 위탁처리 할 계획임	-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방진망 설치, 공사장 내 차량 저속운행 (20km/hr 이하), 살수시설 운행 등 비산 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 및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방진망 설치, 공사장 내 차량 저속운행 (20km/hr 이하), 살수시설 운행 등 저감 대책을 수립함	반영
	○공사 장비 투입 시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가설방음판넬 설치, 장비의 분산투입,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 하여야 함.	○공사시 소음 영향예측을 통한 가설방음 판넬 설치 등 주변 정온시설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함	반영
	○공사 시 강우로 인해 유출되는 토사가 수계에 미치는 수질오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공작업은 우기를 피하여 실시 하고, 필요할 경우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금정저수지, 하류 농경지, 민가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	○공사 시 강우로 인한 인근수계, 주변 농경지 및 민가에 피해가 없도록 토공작업은 우기를 피하여 실시하고, 필요시 오탁방지막 설치 등 저감대책을 수립함	반영
	○사업계획 주변지역은 주거시설 등 정온 시설(음성소망병원, 관성리 주거지 및 가옥, 무수마을, 축사)등이 다수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공사 시 또는 산업단지 운영 시 소음·진동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철저히 마련·시행 하여야 함.	○공사 시 인근 정온시설(음성소망병원, 관성리 주거지 및 가옥, 무수마을, 축사 등)의 소음·진동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가설방음판넬 등 저감 대책을 수립함 ※ 운영시 소음·진동 영향은 없음	반영

제2장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건	조 치 계 획	비고
충청 북도	○ 계획지구 지역주변 현지조사 결과 조류 중에 법정보호종인 원앙, 황조롱이, 새 매 등이 관찰되었고 문헌조사 시 수달, 삵, 매, 큰말뚝가리, 새호리기, 흰녹물떼새, 황조롱이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사업시행 시 확인 될 경우 서식지, 먹이원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환경부의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환경영향평가 지침” (‘13.11)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서식지를 조성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계획지구 지역주변 현지조사 결과 법정 보호종인 원앙, 황조롱이, 새매 등, 문헌 조사 시 수달, 삵, 매, 큰말뚝가리, 새호리기, 흰녹물떼새, 황조롱이 등이 조사된 바, 사업 시행 시 서식지, 먹이원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환경부의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환경영향평가 지침” (‘13.11)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서식지를 조성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에서 제시된 지역주민의견과 관계 기관의 검토의견 및 협의의견을 준수 하고, 환경관련 제반규정을 이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고·공람 및 지역주민의견수렴,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본보고서에 반영하였으며, 협의의견 및 환경관련 제반규정을 이행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하겠음	-
	○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전략환경 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및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민원발생 및 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전략환경 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및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민원발생 및 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음	-
	○ 본 검토의견은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타법(규정) 및 타 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함. 끝.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환경 영향평가법에 의해 지역주민, 관련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함	반영
음성군	☐ 검토의견 ○ 대안은 실천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타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반영하여 설정하여야 함.	○ 대안은 실천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타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반영하여 설정함	반영
	○ 주민설명회 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추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끝.	○ 사업 인근지역(생극면)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주민의견은 없음	반영

2.3 의견수렴 관련서류

환경부(1/4)	환경부(2/4)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 (금정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 계획명 : 금정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일원 ○ 면 적 : 40,110㎡(인공습지 2개소, 침강지 1개소, 마름제기 등) ○ 기 간 : 착공 후 3년 이내 ○ 계획수립권자(승인권자)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 협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I. 총 관 ○ 본 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일원의 저수지에 대한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으로,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중점 평가하여야 함 ○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생태·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현재까지 시행된 수질개선사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사업별 수질개선 효과 분석 및 문제점(또는 우수사례)을 바탕으로 급회사업의 시공방법, 규모에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 * '07년부터 호내 수질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16년 까지 22개소 완료) II. 항목별 검토의견 가. 자연환경의 보전 ○ 호소 가장자리(특히 하천수가 유입되는 지역)의 수생식물군락은 어류의 산란장, 치어 생육장소 등의 역할이 있는 바, 공사시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10 -	- 본 지구에 식재되는 정수식물 선정 시에는 현지에 서식하는 종으로 선정하여 식재 - 수질개선 대책으로 수생식물 제거 사업이 있는 바, 수생식물(마름 및 자라꽃)이 수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국내 추가사례와 문헌을 조사하고, 필요 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제시 ○ 인공구조물(침강지 등)의 설치는 수체흐름 정체, 수생태계 단절 등 수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인공구조물의 적정한 위치, 규모, 형식 등을 면밀히 검토·제시하여야 함 나. 수환경의 보전 ○ 본 사업지구 호소수질 결과, 농업용수 수질기준(IV등급)을 크게 초과하지 않은 바,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환경부 수질측정망 및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지점을 도면에 표시 - 환경부 수질측정망 조사결과를 측정 연월일을 포함하여 제시 ○ 급회 수질개선 사업으로는 저수지 수질개선의 한계가 있는 바, 유역내 수질오염물질(점, 비점) 발생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오염원의 저수지 유입을 차단(배당 저지제와 협의)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질개선 방안(배당 자치단체 합동)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저수지 유역내 마을 위치, 가구수, 생활하수 발생 및 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쓰레기 방치(농약, 비료 관련), 축산농가 등 오염원 현황 제시(저수지 500m 이내) 및 저감대책 수립 ○ 저수지와 농경지를 연결하는 용수로 피격도 관리 등 하류부 수질개선 대책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11 -
환경부(3/4)	환경부(4/4)
○ 수질개선 시설물(인공 습지, 침강지 등)의 경우 강우시와 비강우시(평상시) 유입수의 유입경로 및 배수체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강우시와 비강우시(홍수년, 갈수년, 평수년 등 고려) 하천수 및 강우유출수의 유입경로 및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 시행후 호소의 수질변화(가 양수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 호소의 수질개선 방법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계획과 구분화된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시나리오별 수질예측에서 2013년도를 기준연도로 채택한 사유 제시 - 인공습지 필요면적 산정근거, 계획, 계획평면도, 수질계통도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획유량과 수리학적 체류시간을 명시 - 양수지점의 수량 및 수질현황, 양수량, 양수방법(지속적 또는 간헐적)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 - 호소의 수질(TOC)이 최고, 평균, 최저일 경우를 고려하여 양수에 따른 수질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목표수질(TOC)의 최고치와 평균치 설정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2007~2016) 등 가용통계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호소수질모형의 보정 및 검증은 수행, 그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제시 - 강대 부하량 변화에 따른 수질변화 예측 모의 시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각 모의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제시하되, 공간적 분포결과를 포함 - 무대책, 식생수로, 식생수로, 준설, 침강지, 식생수로+준설, 식생수로+침강지, 준설+침강지, 식생수로+준설+침강지 - 모의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 전후의 관계기(4~9월) 수질을 비교하여 기준년 대비 수질개선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 - 기존 수질측정망 자료와 연계하여 각 시설별 수질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연도에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수질관리대책 마련 - 12 -	다. 환경기준 부합성 ○ 침강지 계획지역에서 준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준설토 발생량, 처리·제활용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2차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토 활용(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점체수역 내 퇴적물은 유기물 함량이 높아 정기간 노상에 침치될 경우 부패로 인한 악취와 비점오염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공사소음으로 인해 정온시설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초과 시에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끝. - 13 -

제2장 의견수렴 결과

충청북도(1)	충청북도(2)
-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금정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 계획개요 ○ 계획명 : 생극면 금정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 위치 :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금정저수지) ○ 면적 : 40,110㎡ ○ 시행기간 : 2015년 ~ 2018년 (4년간) ○ 계획수립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 협의기관 : 환경부 ○ 주요계획 : 인공습지 및 침강지 설치, 기존습지 정비, 호내식생마름 및 자라풀 제거 등을 통한 호유일부 및 호내 수질개선 대책 마련 □ 검토의견 ○ 본 사업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 2. 개발기본계획 과. 특정지역의 개발 2)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계획의 확정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라.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단,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 절차를 ‘생략’ 할 수 있음.) ○ 위 협의 후 개발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승인권자는 사업의 승인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생태계훼손면적 등을 산정하여 우리도(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 본 계획은 인공습지, 식생수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시 대규모 토사이동·장비(덤프트럭1대, 굴삭기1대)투입 등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변지역의 정온시설 등이 다수분포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환경 관련 규정에 따른 인·허가·신고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수거·운반·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방진망 설치, 공사장 내 차량 저속 운행(20km/hr 이하), 살수시설 운행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 및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공사 장비 투입 시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가설방음펜넬 설치, 장비의 분산투입,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공사 시 강우로 인해 유출되는 토사가 수계에 미치는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공작업은 우기를 피하여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금정저수지, 하류 농경지, 민가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계획 주변지역은 주거시설 등 정온시설(음성소방병원, 관성리 주거지 및 가족, 무수마을, 축사)등이 다수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공사 시 또는 산업단지 운영 시 소음·진동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철저히 마련·시행 하여야 함. ○ 계획지구 지역주변 현지조사 결과 조류 중에 범정보호종인 원앙, 황조롱이, 새매 등이 관찰되었고 문헌조사 시 수달, 삵, 매, 큰말뚝가리, 새호리기, 흰늑대물떼새, 황조롱이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사업시행 시 확인 될 경우 서식지, 먹이원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환경부의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환경영향평가 지침” (“13.11)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서식지를 조성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충청북도(3)	음성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지역주민 의견과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협의의견을 준수하고, 환경관련 제반 규정을 이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및 예측의 부정적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민원발생 및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본 검토의견은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타법(규정) 및 타 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함. 끝.	 음 성 군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장) (경유) 제목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금정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회신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5441호(2017.11.10.)와 관련됩니다. 2. 「금정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불일과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의견 ○ 대안은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타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반영하여 설정 하여야 함. ○ 주민설명회 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추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끝.  주무관 반상진 환경정책팀장 이광 2017. 12. 7 환경위생과장 안필 참조자 시행 환경위생과-64013 (2017. 12. 7.) 접수 농업기반과-6055 (2017. 12. 7.) 우 27090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 http://www.umsong.go.kr 전화번호 043-871-3792 팩스번호 043-871-1919 / aa0282@korea.kr / 대외민 공개 【 일차리가 상장이요 복지입니다. 】